

“인공어초,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야… 안전·품질 확보”

‘입찰방식’ 정상화 나선 강원도 건설업계

수중·준설작업 주공사인데 물품구매·철근콘크리트로 발주
건설업체 참여 제한·하차보수 취약… 시설품질 하락 불가피

강원지역 건설업계가 10년 이상 지속된 강원도 인공어초 공사 ‘입찰’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공어초 공사는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을 위해 산란장이나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7일 강원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인공어초 발주 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하도록 강원도환경해설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사 진행과정 상 인공어초 공사는 수중공사, 준설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가 복합돼 있다. 원자재인 인공어초 제작 자체는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인공어초 제작 자체는 구조물 내구성, 친환경성, 여중 적합성 판단뿐 아니라 해저면의 상태, 해류, 선로 등을 감안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치상 문제로 구조물이 파손되면 해양폐기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공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공어초 공사는 수중 또는 준설공사를 직접하게 수행하는 과정이 핵심요소로 공사 전체의 물량 비중을 기준으로 주공사를 판단해야 함”이라며 “이에 따라 인공어초 공사를 물품 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공어초 공사가 물품이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발주로 나오게 된 이유는 1997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법령체계가 재편됐기 때문이다.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서 인공어초 공사가 삭제돼 일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인공어초 공사가 토목공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환경해설장소가 동해안 연안 바닷속에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대표적인 일부 공사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공사 예시에서 삭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998년 2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인공어초 공사가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당시 건교부는 인공어초를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따라 일정한 규격에 맞도록 철근배근 조립,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어초설치지역까지 운반, 수중에 투하하는 공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수중공사가 복합된 일반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간헐 강원도회는 또한 도에 인공어초 사업 발주 시 시공·설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건설공사로 발주해 안전사고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이전까지 발주처들은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때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해야 했지만 2008년 1월부터는 모든 물품의 자체 조달이 가능해졌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인공어초 공사 등 수중건설업계가 수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물품구매·설치로 발주해 시공부터 설치까지 일괄 수행하도록 발주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발주처가 재료비와 노무비 비중을 고려해 재료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시설공사라 하더라도 물품제조·구매로 발주토록 한 것이다. 이에 시공 과정의 연계성, 시공기술 부족에 따른 시설의 품질하락이 우려돼 왔다.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정기적인 하자검사 의무가 있다. 반면 물품구매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 등이 없어 하자보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할 경우 물품구매계약 관련, 건설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